

의안번호	2200078
의 퇴 인	이성윤의원
회 답 일	2024. 6. 24 .
추계번호	24D0418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026년 2년간 총 57억 9,100만원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합계
특별검사의 임명 (안 제3조제4항),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안 제6조제4항),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안 제7조), 수사기간 등(안 제9조), 재판기간 등(안 제10조), 보수 등(안 제13조)	인건비	1,866	420	2,286
	운영비	2,660	175	2,835
	시설비	670	0	670
	합계	5,196	595	5,791

주: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5년 초로 가정하였고,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원을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 인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실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제4항(특별검사의 임명)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제4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별검사는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5명 이내의 파견검사, 3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 및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9조(수사기간 등)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특별검사는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3조(보수 등)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함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함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고, 특별검사의 퇴직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제4항(특별검사의 임명)	○	
2	안 제6조제4항(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	
3	안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	
4	안 제9조(수사기간 등)	○	
5	안 제10조(재판기간 등)	○	
6	안 제13조(보수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특별검사 등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로 나뉘고, 운영규모가 수사기간과 기소 후 공소유지기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추계
- 특별검사 등의 운영비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라 함)에 따른 고 이예람 중사 특검에 소요된 경비를 참고
 - 제정안의 경우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등의 처우 및 활동기간 등이 아래의 표와 같이 유사함

[표 2] 제정안과 고 이예람중사 특검법 비교

구 분	제정안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특별검사 등의 대우 및 보수 수준	특별검사: 고등검사장 수준 특별검사보: 검사장 수준 특별수사관: 3급~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수준	좌동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인원	특별검사보: 최대 2명 특별수사관: 최대 30명	특별검사보: 최대 4명 특별수사관: 최대 40명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직원의 수	파견검사: 최대 5명 파견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최대 30명	파견검사: 최대 10명 파견공무원: 최대 30명
수사기간	140일 이내	120일 이내
공소유지기간	1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수사기간은 4개월, 2024년 6월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특별검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 중(공소유지기간)임
- 수사기간에 특별검사보는 2명, 특별수사관은 3급 수사관이 30명 임명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소유지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 및 직급 구성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사례를 준용
 -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특별수사관을 정원의 일부만 임명하고, 기타직을 수사인력 보조 등을 위하여 추가 채용하여 운용¹⁾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1)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의 경우 특별수사관 정원은 최대 40명이나, 실제 수사기간에 임명한 특별수사관은 5명이고, 기타직 19명을 채용하였음(자료: 법무부)

제정안에 따라 임명될 특별수사관과 기타직 수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간에 기타직 없이 모두 특별수사관(3급)을 정원에 따른 최대인원(30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

- 공소유지기간에 유지하는 인원은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의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의 인원 수와 구성²⁾을 참고하되, 기타직은 특별수사관(3급)으로 임명한다고 가정하여 추계에 반영함

□ 파견인원은 최대인원인 35명으로 가정

- 제정안은 특별검사로 하여금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는 5명 이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은 3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간에 최대인원인 검사 5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30명을 파견한다고 가정하고 추계
-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

□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경비 등에 대한 단가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경비집행내역⁴⁾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⁵⁾ 및 소비자물가상승률⁶⁾을 반영하여 산정함

- 특별검사의 퇴직시까지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으

- 2)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6명, 기타직 1명, 파견공무원 2명
(공소유지기간 중 퇴사 등으로 전체 공소유지기간 인원 수와 직급별 인원의 변동이 있었으며, 공소유지기간의 평균 인원이 12명임)(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 (2024.6.13.))
- 3) 파견인원의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4)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관련 경비 집행 내역: 2022년 및 2023년

(단위: 백만원)

	수사기간 (2022. 5. 16. ~ 2022. 9. 12.)	공소유지기간 (2022. 9. 13. ~ 2023.12.31.)
직무활동 운영비 ¹⁾	1,727	525
시설비 ²⁾	407	172

주: 1. 수사기간 활동인원은 총 62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5명, 기타직 19명, 파견인력 34명)이었으며,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은 12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6명, 기타직 1명, 파견인력 2명)임

2. 시설비는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등

3. 공소유지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요된 경비만을 집계하여 공소유지기간 경비 집행내역을 산정함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 (2024.6.13.)

5)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2024. 4.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1.7%	2.5%	1.9%	1.9%	1.9%	1.9%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소비자물가상승률(2024. 4. 경제전망 기준)

로 가정

-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른 수사기간은 4개월(2022. 5. 16.~ 2022. 9. 12.)이고, 2024년 6월 현재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운영비와 시설비는 2022년 수사기간(4개월) 및 공소유지기간(15.5개월, 2022. 9. 13~ 2023. 12. 31.) 지출된 비용을 반영하여 추계
- 시설비는 2025년에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

□ 수사기간은 140일, 공소유지기간은 12개월로 가정

- 현 시점에서 실제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은 각각 최장 기간(140일, 12개월)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 2026년으로 함

- 2025년 1월 1일부터 140일간 수사 후, 12개월의 공소유지기간 필요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수사기간(140일, 4.7개월)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지급된 2023년 기준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 임금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표 3]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지급 보수(2023년 기준)

(단위: 원)

직급	월 평균 보수
특별검사	12,079,000
특별검사보	10,936,000
특별수사관(3급)	7,139,000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 (2024.6.13.)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3.6%	2.6%	2.2%	2.2%	2.1%	2.1%	2.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한 월 보수에 수사기간(140일) 및 공소유지기간(12개월)에 해당하는 인건비 소요액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 수사기간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 추정: 2025년

구분	1인당 월 보수 (A, 백만원)	인원(B, 명)	기간(C, 개월)	재정소요(D) (=A×B×C, 백만원)
특별검사	12.6	1	4.7	59.2
특별검사보	11.4	2	4.7	107.2
특별수사관	7.5	30	4.7	1,057.5
합계	—	33	—	1,223.9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2024.6.1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 추정: 2025년, 2026년

구분	2025년				2026년				합계
	1인당 월 보수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월 보수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특별검사	12.6	1	7.3	92	12.9	1	4.7	60.6	152.6
특별검사보	11.4	2	7.3	166.4	11.6	2	4.7	109	275.5
특별수사관	7.5	7	7.3	383.3	7.6	7	4.7	250	633.3
합계	—	10	—	641.7	—	10	—	419.7	1061.4

주: 공소유지기간(12개월)은 2025년 수사기간이 종결된 이후부터 기산되므로, 2025년에는 7.3개월, 2026년에는 4.7개월이 해당됨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2024.6.1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은 22억 8,600만원으로 추계

[표 6]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소요되는 인건비 추정: 2025년, 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합계
	수사기간	공소유지기간	공소유지기간	
인건비	1,224	642	420	2,286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운영비

□ 특별검사 등의 운영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소요된 운영비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 수사기간 운영비는 총 23억 9,700만원으로 추계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4개월) 직무활동 운영비 1명당 단가⁷⁾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⁸⁾를 적용하면, 140일간의 수사기간의 직무활동 운영비 총액은 23억 9,700만원

□ 공소유지기간 운영비는 총 4억 3,800만원으로 추계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소유지기간(15.5개월) 직무활동 운영비 1명당 단가⁹⁾에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동안의 활동인원 수¹⁰⁾를 적용하면 12개월의 공소유지기간의 직무활동 운영비 총액은 4억 3,800만원

□ 수사기간 및 공소유지기간 동안 소요되는 운영비 총합은 28억 3,500만원

[표 7] 제정안에 따른 운영비 추정: 2025년, 2026년

(단위: 개월, 명,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합계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 (B, 명)	기간 (C, 개월)	재정소요 (D=A×B×C, 백만원)	1인당 재정소요 (E, 백만원)	인원 (F, 명)	기간 (G, 개월)	재정소요 (H=E×F×G, 백만원)	
운영비	수사기간	7.5	68	4.7	2,397	0	0	0	0	2,397
	공소유지 기간	3	12	7.3	262.8	3.1	12	4.7	174.8	438
합계		-	-	-	2,660	-	-	-	175	2,835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2024.6.1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시설비

□ 시설비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당시 소요된 시설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

7) 수사기간 동안의 직무활동운영비(17억 2,700만원)를 개월 수(4개월)와 활동인원(62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을 2022년 지출 단가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8) 총 68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인력 35명)

9) 공소유지기간 동안의 직무활동운영비(5억 2,500만원)를 개월 수(15.5개월)와 활동인원(12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을 2022년 지출 단가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10) 총 12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7명, 파견인력 2명)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시설비는 2025년에만 발생
- 수사기간 시설비는 4억 8,280만원으로 추계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¹¹⁾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수사기간 활동인원 수¹²⁾를 적용한 수사기간 시설비는 4억 8,280만원임
-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1억 8,720만원으로 추계
 - ‘고 이예람 중사 특검’ 공소유지기간에 사용한 시설비 1인당 단가¹³⁾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소유지기간 활동인원 수¹⁴⁾를 적용한 공소유지기간 시설비는 1억 8,720만원임
- 시설비 총액은 다음의 표와 같이 6억 7,000만원으로 추정됨

[표 8] 제정안에 따른 시설비 추정: 2025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1인당 재정소요 (A, 백만원)	인원(B, 명)	재정소요 (C=A×B, 백만원)
시설비	수사기간	7.1	68	482.8
	공소유지기간	15.6	12	187.2
합계		—	—	670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국(2024.6.13.)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시점을 2025년 초로 가정하였고, 특별수사관 및 파견인원을 제정안에 규정된 최대 인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11) 수사기간 동안의 시설비(4억 700만원)를 활동인원(62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을 2022년 지출 단가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12) 총 68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인력 35명)

13) 공소유지기간 동안의 시설비(1억 7,200만원)를 활동인원(12명)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금액을 2022년 지출 단가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

14) 총 12명(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특별수사관 7명, 파견인력 2명)

실제 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한예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한예슬	02-6788-4831	yeseulhan@assembly.go.kr